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합30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3731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합3094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최국신

변론 종결 2022. 7. 20.

판결 선고 2022. 9. 21.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지역주택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 등

1)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5. 6. 2. C(2015. 5. 26. 'F'이라는 상호로 설립 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6. 18. 'G'로, 2015. 12. 3. 'C'로 순차적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일컫는다)에 이자율을 연 9%로 정하고, C 발행주식 3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511,600뉴질랜드달러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2015. 6. 5. 858,000뉴질랜드달러를, 2015. 6. 15. 390,000뉴질랜드달러를, 2015. 6. 25.

1,263,600뉴질랜드달러를 각 송금함으로써 위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E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 원리금 합계 2,861,707,261원(= 원금 1,953,383,796원1) + 이자 908,232,465원) 및 그중 원금 1,953,383,79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27.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6180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E는 2021.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C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2) 위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고, 다시 원고는 2021. 5. 3. E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밝히면서 E의 대리인으로서 C에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 5. 4. C에 도달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 등

1)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6. 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가칭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C과 사이에 2015. 6. 22. 대여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15. 6. 23. C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C에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채무액은 2018. 12. 6. 기준으로 2,004,456,985원(= 원금 1,814,433,592원 + 이자 190,023,393원) 상당이다.

2) 이 사건 조합과 C은 2018. 12. 5. 피고, I, J(이하 이들을 통틀어서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8. 12. 6.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K 등부 2018년 제4186호로 인증받았다.

1. C의 채권자 및 채권액(1,151,500,000원)

채권자1: 피고(금액 300,000,000원정)

피고(금액 200,000,000원정)

채권자2: I(금액 200,000,000원정)

채권자3: J(금액 451,500,000원정)

2. C의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외 부지(이하 "교환 토지" 약 2,983m²: 광주광역시 북구 (표시 생략)

3. 이 사건 조합은 C의 채무자로서 위 제1항 C 채권자인 피고 등 3명에게 이 사건 조합(조합장) 소유의 제2항 토지를 제1항의 금액으로 평가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단1) C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권리 중에서 위 1항 금액인 1,151,500,000원을 직권 공제하라는 C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통해, 조합의 의결절차를 득하는 조건으로 하되, 두 조건의 흠결 발생 시 본 확인서는 무효화하기로 한다.

단3) 이 사건 조합은 위 제3항 단1)항 내지 단2)항의 문서를 받으면, 필요시 조합 이사회 내지 조합원 의결절차를 거친 후 제2항의 소유권을 위 제1항 채권자 1, 2, 3(피고 등을 의미한다) 각각을 공동명의로 하여 이전해주기로 한다.

단6) C에서 위 제1항 각각의 채권자들(피고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조합(조합장) 소유의 토지를 대위 지급하는 방법 이외 현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C의 공식적인 문서가 있으면, 위 제1항 각각의 채권자들과 협의 후 이 사건 조합의 절차에 의거 그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4. 본 건의 정상적인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제1항 C와 채권자들, C와 이 사건 조합, 위 제1항 채권자들과 이 사건 조합과의 관계는 본 확인서 작성 이전의 권리·의무 관계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3) C은 2018. 12. 6.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 중 451,500,000원을 J에게, 2억 원을 I에게, 5억 원을 피고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도인 C(이하 '갑')과 양수인 피고(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채권)

1. 양수도 대상 채권의 세부 내역

이 사건 조합(이하 '병')	광주 북구 L	M	5억 원
-----------------	---------	---	------

2. 대상 채권은 병이 갑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차입한 채무금 잔액 5억 원에 수반되는 인적, 물적 담보를 포함한 기타 부수되는 권리 일체

3. 양수도 대상 채권에 대한 원금과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수도대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양도한다.

제3조(양수도 가액 및 대금의 지급)

1. 양수도 가액은 5억 원으로 한다.

2. 대금의 지급은 본 계약 체결일에 을은 일시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제4조(채무상환의 완료)

본 계약은 첨부된 서류 #1. 확인서(등부2018년 제4186호)(이 사건 확인서와 같다)에 의한 병의 사업외 부지 약 2,983㎡의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채권양수도에 의한 채무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C은 2019. 8. 28. 이 사건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8. 30.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2 내지 34, 39, 42호증, 을 제5, 7, 8,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C의 감사이자 주요주주로, 사실은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C과 통모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 가) E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미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데도, 원고는 E로부터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2021. 2. 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인 E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① E와 C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가 없고, ② 설령 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아니고,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C에 대하여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③ E의 원고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이유 없다.

다) 아울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5억 원은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는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항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의 대표자인 증인 N이 'E, C,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는 원고의 부친인 O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기 전 N과 이 사건 조합장 P이 O와 함께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도 O에게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의 대표자는 Q, C의 대표자는 N으로 서로 상이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가 E, C,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자인 E가 2018. 12. 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C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송신탁 항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뉴질랜드 법인인 R Ltd.(이하 'R'라 한다)에 대한 투자약정금채권 및 상가 매매대금채권 추심, R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 추심을 갈음하여 E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2018. 10. 16.부터 2019. 7. 16.까지 사이의 R에

대한 합계 1,158,499뉴질랜드달러 외화 송금 발신 전문 및 관련 자본거래 신고서(갑 제15 내지 17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바,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E를 대신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만한 특수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5. 3. 원고가 C에 대여금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1. 1. 5. C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E의 2021. 1. 5.자 채권 양도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채권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 양수도 대상이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의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원고로 하여금 E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원고적격 흠결 항변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주위적 청구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실제로 그가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위 기초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와 C의 대표자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당사자란에서명하였고, 위 계약서 본문의 대여금액을 '10억 원'에서 '2,511,600뉴질랜드달러'로, 이자율을 '연 4%'에서 '연 9%'로 수기로 수정하면서 이에 서명한 점,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E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원고는 E로부터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 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E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2021. 1. 5.자 채권 양도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채권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 양수도 대상이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의 오기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5. 3.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C에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대여 원리금 채권 양도 사실에 관하여 C에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5. 3. E의 대리인으로서 C에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21. 5. 4. C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설령 E와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원고는 위 대여 원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C의 사해의사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을 제9호증의 2, 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8. 12. 6.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C의 재무상태표,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 총계가 5,568,489,7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산으로 계상된 유형자산이 모두 실존하고 채권이 모두 변제가능성이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4, 18 내지 24, 43 내지 55, 59, 6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은행에 대한 2022. 4. 28.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6. 기준으로 C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751,289,050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C의 소극재산을 위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이에 배치되는 C의 2018년도 재무상태표 및 표준대차대조표 부채 총계 기재, 즉 2018. 12. 31. 기준 부채 총계가 4,633,971,462원이라는 기재는 이를 믿지 않는다).

1	E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무	2,599,789,050원3) 원금 1,953,38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12. 6.까지 연 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606,405,254원
2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00원
3	J에 대한 채무	451,500,000원
4	I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5	T에 대한 채무	520,000,000원
6	U에 대한 채무	128,000,000원
7	V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8	W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9	X에 대한 채무	34,000,000원

1	E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무	2,599,789,050원3) 원금 1,953,38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12. 6.까지 연 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606,405,254원
10	Y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11	Z에 대한 채무	44,000,000원
12	AA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13	AB에 대한 채무	230,000,000원
14	AC에 대한 채무	600,000,000원
15	AD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16	AE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17	AF에 대한 채무	60,000,000원
18	AG에 대한 채무	24,000,000원
합계	5,751,289,050원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위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5억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C의 재산·채무상황,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C은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사해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특히 대물변제는 그 자체로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지 변제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대다수의 재판례는 대물변제 일반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가 보유한 채권을 일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 ④ 대물변제로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와 다른 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만 할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여타의 대물변제 일반이나 담보제공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AH학회, 민법 채권총칙(2) 제5판 416면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6.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액수만으로도 2,599,789,050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C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액수는 5억 원으로, 피보전채권이 위 대여금 채권을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고, 아직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조현호

판사김경준

판사원도연

별지

1) 2,511,600뉴질랜드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2) 다만 채권 양도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채권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양수도 대상을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으로 기재하였다.

3) 원금 1,953,38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12. 6.까지 연 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606,405,254원